

중소기업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한창화 / 상공부 중소기업국 지도과

1. 해외투자의 필요성

해외투자는 기업의 국제화의 한단계로서 과거 생산을 국내에서 하고 단순히 상품만을 수출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해외의 현지기업에 대한 기술제공·제휴, 해외의 현지기업과의 합작 투자, 현지생산시설의 단독 설립, 해외기업의 매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해외투자는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므로 국내의 경제활동 보다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어렵고 리스크가 수반되지만 왜 우리가 이제 해외투자에 눈을 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해외투자는 임금상승 및 원화절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를 극복할 수 있다.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상승 및 원화 절상으로 수출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환율이 안정되고 임금수준이 낮은 제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저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은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함으로써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윤을 확보 할 수 있다.

둘째, 해외투자는 보호무역장벽의 극복 및 대외 통상마찰 완화에 기여한다.

최근 국제무역 환경은 선진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GATT 체제의 약화, 블록, 경

제화 경제의 심화로 우리상품 수출에 대한 보호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이나 현지생산을 통해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수출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세째, 기업의 국제화에 기여한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해외시장 정보의 축적과 국제경영능력의 제고를 가져와 기업의 국제화에 도움을 주고 또 첨단기술 집약지대에의 해외진출은 선진기술을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고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네째, 해외투자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 해외투자는 해외부문 통화증발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통화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물가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다섯째, 부족한 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 해외의존도가 큰 광물자원, 임산물, 수산물 등의 개발 수입을 확대하여 저렴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안정을 장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특징

첫째,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몇년도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실적은 1988년 9월말 현재로 138건 3,100만 불로 전체 투자건수의 22.2%, 전체투자금액의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84년 말 현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전체 투자 금액의 16%로서 우리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중소기업의 해외 정보 부족, 국제 경영 능력의 부족,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해외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하는 해외투자 전문 기구가 없다는데 그 원인이 크다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영세한 투자 규모이다. 1988년 9월 말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 해외투자 규모는 22만 5,000불 정도로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 자산 규모로 볼 때 영세하다.

해외투자 실적
(단위 : 백만불)

	'86	'87	'88(9월말)	누계
총 투자	157 (32)	333 (59)	142 (87)	1108 (621)
중소기업 투자	2 (13)	6 (33)	10 (37)	31 (138)

* 괄호안은 건수이고, 누계는 지금까지 해외투자 총 합계임

세째, 단독 투자의 비중이 크다. 1987년 말 현재 단독 투자가 358건으로 전체의 67%를 점하고 있어 합작 투자보다 단독 투자의 비중이 크고 무역업은 전체의 91.6%가 단독 투자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다.

3. 우리나라 해외투자 지원제도

해외투자는 우리나라와 언어, 제도, 관습이 상이한 외국에서 기업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해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 세제, 보험, 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가. 금융지원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금융 지원 제도로는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대출 등이 있으나 해외투자자금대출이 가장 일반적인 자금 지원 제도이다.

1) 응자 대상 사업

- 중요 물자 또는 주요 자원의 확보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
- 외국과의 경제 협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
- 해외 교민의 경제적 지원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
- 기타 해외 수출입 시장 확보 또는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

2) 응자 대상 자금

-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법인에 출자(주식 취득 포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 우리나라 기업이 출자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외국인이 출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우리나라 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3) 응자 조건

○ 대상자(차주)	해외투자를 행하는 국내 기업
○ 응자 형식	외화 표시 어음 대출 또는 증서 대출
○ 응자 비율	해외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총액의 〔 대 기업 : 80% 범위 내 중소기업 : 90% 범위 내 〕
○ 이율	• 대 기업 : 연 8.5% • 중소기업 : 연 7% • 중요 물자 및 자원 확보 : 연 8%
○ 이자 징수 방법	• 이자는 당해 사업의 관계 계약서 또는 사업 계획서의 이자 지급 계획에 따라 연 1~2회 후취 • 연체 시에는 소정의 연체 대출 이율 적용 (현행 연 20%)
○ 응자 기간	최장 10년 이내
○ 상환 방법	당해 사업에 의한 분할 상환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장 3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있음.
○ 담보	국내 담보(국내 금융 기관 지급 보증서, 신용 보증 기금 보증서, 부동산, 동산 등) 취득 및 연대 보증인 입보
○ 약정 수수료	대출 승인 날로부터 미인출 승인액에 대하여 연 0.5% 징수

나. 세제지원

1)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

해외투자사업자가 해외에서 해외투자활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적립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외투자자는 해외투자금액의 15% (자원개발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 까지 해외투자손실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동적립금은 손비로 인정받아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해외투자 손실준비금은 적립후 해외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후부터 4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으로 산입하게 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2)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해외투자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국내에서 동세액을 공제하여 주므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공제금액은 당해년도의 법인세액에 외국원천소득이 과세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액수가 된다.

$$\text{외국원천소득} = \frac{\text{공제금액} - \text{법인세액} \times \text{과세 표준액}}{\text{법인세법 제24조의3, 소득세법 제76조}}$$

3) 외국납부세액의 제제도

1986년12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신설된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자국내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해외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준 경우 감면받은 상당액 만큼을 외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감면(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결정 및 공제율 결정은 각각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결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

4)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배당소득 면제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자원보유국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면제한 경우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면제대상 배당소득

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물개발사업 및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본항과 제3항의 외국납부세액의 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다. 보험지원

우리나라 해외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에서 전쟁·혁명·내란 등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투자원금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송금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해외투자보험제도가 마련되어 현재 수출입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 보험대상투자

해외투자보험의 대상투자는 ①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② 합작투자시 외국합작 상대방에 대한 투자자금의 장기대부, ③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사채 또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대부금채권 취득, ④ 해외직접사업용의 부동산, 설비, 광업권, 공업소유권 등의 취득 등이다.

2) 담보위험

해외투자보험은 해외투자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한다.

- ① 수용위험 : 외국정부에 의한 재산의 몰수·박탈
- ② 전쟁위험 : 전쟁·혁명·내란·정변 등으로 인한 투자기업의 사업휴지 및 파산
- ③ 송금위험 : 투자유치국(외국정부) 조치에 의한 이자, 배당금의 송금 불능

3)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이자, 배당예정액을 포함한 해외투자금액의 90% 이내이며, 손실액의 90% 이내에서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최장 15년으로 되어 있으나 해외투자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

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보험료율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1년마다 보험금액에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위험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 된다. 보험료율은 국별위험등급과 담보위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라. 기타지원

1) 유휴설비해외이전자금지원

원화 결상의 가속화와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이 신규유망업종으로 사업전환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설비를 해외에 이전하는 경우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과 중소기업 계열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전환 등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 발생한 유휴설비를 현물투자의 방식으로 해외에 이전하는 중소기업자이다. 이에 대한 자금으로 구조조정자금총 10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유휴설비 해외이전자금 지원

	지 원 한 도	기 간	금리
시설자금	5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이내)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년7%
운전자금	2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90%이내)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년7%

2) 정보제공

해외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대상국의 정치, 금융, 세제, 관습, 사회제도는 물론이고 합작회망기업이나 투자진출유망업종 등 세부적 사항까지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투자정보 수집능력이 있어 별 어려움이 없으나 중소기업은 해외기반이 없기 때문에 투자정보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해외투자상담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투자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이밖

에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도 해외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중소기업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앞에서 우리나라 해외투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금융, 세제, 보험 등의 지원만 있으면 자체의 국제경쟁능력으로 충분히 해외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위 지원 외에 별 다른 지원책이 없다. 어른과 어린이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듯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해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서 보다 보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해외투자주식회사와 중소기업해외투자조합을 육성하여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중소기업해외투자주식회사

중소기업해외투자주식회사란 해외투자를 하는 중소기업해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상호 배분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이것은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대해 투자를 하고 창업회사가 얻은 수익을 상호 배분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해외투자주식회사는 해외투자를 하는 중소기업해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은행에서 단순히 용자만 해주는 것과 달리 투자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와 관련되는 정보제공, 사업의 알선,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을 행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해외투자회사는 위험부담률이 높은 해외에 투자하고 투자대상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투자회사에 대해 특별히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해외투자주식회사 설립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해외투자주식회사 설립안〉

(1) 설립목적

중소기업해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이 해외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 파트너 알선, 정보 제공 등

(2) 기능

- 해외투자를 하는 중소기업해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 해외투자와 관련되는 상담·정보 제공 및 해외투자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

- 해외투자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

(3) 해외투자주식회사에 대한 정부지원

- 금융지원 : 해외투자기금에 의한 투자 또는 융자

- 세제지원

-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나 주식처분에 따르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면제

- 투자손실준비금의 적립인정 및 손금산입

- 투자회사에 투자한 자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인정

- 자금동원지원 : 자본금 및 적립금 총액의 5배 범위내 사채발행 허용

(4) 해외투자기금

- 재원

- 정부 및 정부외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기타수입

- 관리 : 상공부

- 사용

- 해외투자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 중소기업해외투자조합에 대한 지원

나. 중소기업해외투자조합 육성

한개의 중소기업이 낯설은 해외에 투자하려면 정부부족, 자본부족, 국제경영능력부족 등으로 여간해서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개의 중소기업이 조합을 결성하면 해외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분산되고 각종 애로사항을 타개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진출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이나 공동시장개척을 협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한 해

외투자조합을 육성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소기업해외투자조합 육성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해외투자조합 육성안>

(1) 목적

동일 또는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해외투자에 따르는 각종 애로사항을 협동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조합을 결성하도록 함

(2) 설립요건

-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출자

-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

(3) 기능

- 해외진출을 위한 공동 투자

- 해외투자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 시장개척을 위한 공동 노력

- 기술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

(4) 해외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지원

- 자금지원 : 해외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 담보지원 : 해외투자보험 우대제도 실시

- 세제지원

- 해외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시의제배당세 면제

-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5) 지원체계

